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67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 의 자 : 김남근 · 김동아 · 김문수
김준혁 · 박홍배 · 안호영
이병진 · 이소영 · 이용우
최혁진 의원(10명)

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여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삭제함(안 제12조 삭제).

나.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회원이 되며,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은 가상자산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제12조의2(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설립) ①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이하 “시장감시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시장감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장감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의3(정관) ① 시장감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감시원은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4(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시장감시원이 아닌 자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의5(임원) ① 시장감시원에 9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시장감시원 원장 1인

2. 상근이사인 시장감시업무 담당이사 1인

3.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

4. 이사 6인 이내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시장감시원의 건전한 경영과 공

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제12조의10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시장감시원은
2개월 이내에 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시장감시원의 사외이사(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
서 시장감시원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원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

제12조의6(이사회) ① 시장감시원에 제12조의5제1항 각 호의 자로 구
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
의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
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7(임원의 자격 등) ① 시장감시원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감시원 사외이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8(정보이용금지 등) ① 시장감시원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감시원의 상근 임직원은 회원 및 관련 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9(감사위원회) ① 시장감시원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감시원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시장감시원 회원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2. 그 밖에 시장감시원의 경영 및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시장감시원은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사원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10(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시장감시원에 임원의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11(회원)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장감시원의 회원이 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가상자산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시장감시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감시원은 회원으로부터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의12(업무) 시장감시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가상자산시장의 시장감시,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
2. 가상자산시장 간의 연계감시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4.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가상자산시장 간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징계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13에 따른 가상자산시장감시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제12조의13(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원은 제12조의1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상자산시장감시규정

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의14(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시장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1.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이 시장감시원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회원이 제10조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시장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14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u> <u>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u> <u>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u> <u>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u> <u>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u> <u>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u> <u>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u> <u>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u> <u>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u> <u>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u> <u>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u> <u>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u> <u>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u> <u>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u> <u>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u> <u>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u> <u>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u> <u>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u> <u>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u> <u>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u> <u>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u>	<u><삭 제></u>

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
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장의2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제12조의2(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설립) ① 가상자산시장을 감시
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시장감시
원(이하 “시장감시원”이라 한
다)를 설립한다.

② 시장감시원은 법인으로 한
다.

③ 시장감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
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의3(정관) ① 시장감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신 설>

<신 설>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감시원은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4(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시장감시원이 아닌 자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의5(임원) ① 시장감시원에

9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시장감시원 원장 1인

2. 상근이사인 시장감시업무 담당이사 1인

3.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

4. 이사 6인 이내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원 원장(이하 “원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시장감시원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제12조의10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시장감시원은 2개월 이내에 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시장감시원의 사외이사(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장감시원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신 설>

<신 설>

을 받아 사원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

제12조의6(이사회) ① 시장감시원에 제12조의5제1항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7(임원의 자격 등) ① 시장감시원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감시원 사외이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

<신 설>

<신 설>

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8(정보이용금지 등) ①

시장감시원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감시원의 상근 임직원은 회원 및 관련 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9(감사위원회) ① 시장감

시원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감시원의

<신 설>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시장감시원 회원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2. 그 밖에 시장감시원의 경영 및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시장감시원은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사원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10(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시장감시원에 임원의 선임

을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11(회원)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장감시원의 회원이 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 설>

아닌 가상자산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시장감시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감시원은 회원으로부터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의12(업무) 시장감시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가상자산시장의 시장감시,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

2. 가상자산시장 간의 연계감시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신 설>

<신 설>

4.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가상자산시장 간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징계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13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감시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제12조의13(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원은 제12조의1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상자산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의14(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시장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1. <u>가상자산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u> 2. <u>회원이 시장감시원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u> 3. <u>회원이 제10조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u> ② <u>시장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u> ③ <u>시장감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14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u> 제22조(과태료) ① ----- -----
---	---

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통보·보고한 자 8. (생략) ② (생략)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